

1. 개정이유

예비 수의 인력 및 진료법인의 행정적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수의사법 시행규칙 내 수의사 면허 발급, 동물진료법인 등 관련 규제를 완화 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수의사 면허 발급 시 수의사 면허시험 접수 시 제출한 사진을 재활용 할 수 있도록하여 수의사 면허 발급 절차 간소화 (수의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3호개정)
- 나. 동물진료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 시 요구 할 수 있는 서류 목록을 삭제하여 법인의 행정 절차적 부담을 완화(수의사법 시행규칙제22조의8제1항개정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 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 없음
- 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- 2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제3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수의사 국가시험 응시원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한 경우 응시원서에 사용한 사진을 이용하여 면허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사진의 제출은 생략할 수 있다.

제22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할 것을 동물진료법인에 요구할”을 “동물진료법인에 관계되는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, 소속 공무원에게 동물진료법인의 사무 및 재산 상황을 검사하게 할”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.

단, 최근 3년 이내 동일한 서류를 제출한 적이 있는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없다.

제22조의8제1항 각 호를 각각 삭제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면허증의 발급) ① 법 제4조에 따라 수의사의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법 제8조에 따른 수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 1. 2. (생략) 3. 사진(응시원서와 같은 원판으로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) 2장 <후단 신설> ②·③ (생략)	제2조(면허증의 발급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2. (현행과 같음) 3. ----- ----- ----- ----- . 수의사 국가시험 응시원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한 경우 응시원서에 사용한 사진을 이용하여 면허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사진의 제출은 생략할 수 있다. ②·③ (현행과 같음)
제22조의8(법인사무의 검사·감독) ① 시·도지사는 법 제22조의4에서 준용하는 「민법」 제37조에 따라 동물진료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	제22조의8(법인사무의 검사·감독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동물

<u>각 호의 서류를 제출할 것을 동물진료법인에 요구할 수 있다.</u> <u>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최근 5년까지의 것을 대상으로, 제7호 및 제8호의 서류는 최근 3년까지의 것을 그 대상으로 할 수 있다.</u> <u>1. 정관</u> <u>2. 임원의 명부와 이력서</u> <u>3. 이사회 회의록</u> <u>4. 재산대장 및 부채대장</u> <u>5.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대장</u> <u>6. 수입·지출에 관한 장부 및 증명서류</u> <u>7. 업무일지</u> <u>8. 주무관청 및 관계 기관과 주고받은 서류</u> ② (생략)	<u>진료법인에 관계되는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, 소속 공무원에게 동물진료법인의 사무 및 재산 상황을 검사하게 할 ---.</u> 단, <u>최근 3년 이내 동일한 서류를 제출한 적이 있는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없다.</u> <삭 제> <삭 제> <삭 제> <삭 제> <삭 제> <삭 제> <삭 제> <삭 제> ② (현행과 같음)
---	---